

		<h1>보 도 자 료</h1>	
		배포일시	2018. 10. 25.(목) 총 4매(본문4)
담당 부서	감사담당관	담당자	• 과장 김종학, 사무관 이정복, 주무관 주광돈 • ☎ (044) 201 - 3102, 3115
	공공주택추진단	담당자	• 단장 김정희, 팀장 김승범, 사무관 김수현 • ☎ (044) 201 - 4505, 4441
보 도 일 시		2018년 10월 26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25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국토부, 택지 후보지 유출 관련자 수사의뢰 등 조치 발표

- 처벌규정 신설, 적용대상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 조속 추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자료 유출 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.

< 감사결과 및 조치계획 >

-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5일 신창현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에 대해 9월 6일 감사에 착수, 회의자료 관리 소홀 등 관계자들이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.

- 국토교통부가 파악한 유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.

- 8월 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

- 8월 29일 회수되지 않은 자료(LH작성)가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간 회의 시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과천 시장에게 서면으로 전달

- 8월 31일 과천 시장이 신창현 의원 휴대전화로 전송

○ 이어, 신창현 의원실 요청으로

9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담당자가 의원실을 방문,
보안을 당부하면서 관련 설명 및 자료 제출

9월 5일 신창현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 공개

□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가 공개된 이후 진술
번복 등 추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
의뢰하였고,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
(LH)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
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하였다.

○ 또한,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한국토지주택공사
(LH) 관계자는 문책,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
공사 및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하여 조치를 요구하였다.

【 관련자별 조치내역 】

관련자(기관)	조치사항
① 진술번복 등 추가유출 의혹 관련자 (경기도 파견된 국토부 공무원)	수사의뢰
②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및 한국토지주택공사	기관주의
③ 회의자료 관리 소홀 관련자 (LH 3명)	문책
④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 제출 (과천시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직원)	경기도 통보
⑤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(국토부, LH)	업무개선

□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회의참석자 등 관련자들의 추가유출 의혹
해소를 위한 심층 조사는 자체감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 시
관련자(회의자료 소지자 등) 현황을 모두 검찰에 제공하는 한편,

○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, 수사결과 공무원
및 공공기관 직원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
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>

□ 국토교통부는 신규택지 후보지 사전 유출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해 ‘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 강화 방안’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.

① 정보누설 방지조치 기관 확대 및 처벌규정 신설(공공주택특별법 개정)

- 현행법 상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*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만 부여되나, 해당 의무를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기업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협의 주체가 되는 모든 관계기관까지 확대한다.

* 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지정 공고 전까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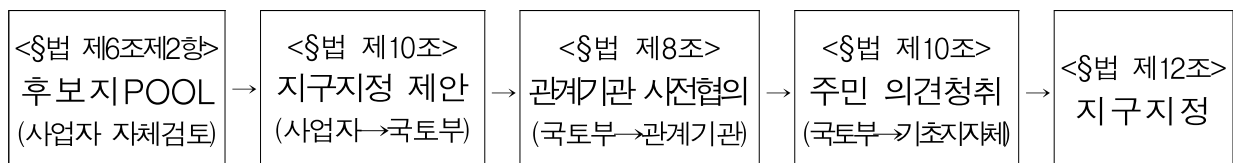
- 또한, 현행 「공공주택특별법」에는 후보지 관련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, 정보누설 시 신분에 관계 없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.

* 공공주택특별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공무원에 한해 타법(공무원법, 형법 등)에 의한 처분·처벌은 가능

② ‘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지침’ 제정

-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 주민 공람 시까지 관계기관 책무, 문서 작성, 회의개최 등 모든 업무 가운데 보안을 강화하는 지침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.

<공공주택특별법 상 지구지정 절차>





←————— 지침의 적용 범위 —————→

- 지침을 적용받아 보안유지 의무를 가진 관계기관에는 국토교통부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이외 지방자치단체, 지방공사, 용역사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·협의를 대상이 되는 모든 기관이 포함된다.
- 또한, 사업 후보지 관련 중요문서는 모두 대외비에 준하여 관리하고 회의를 할 때는 부서장이 보안준수 의무 고지, 회의 후 자료회수 및 파쇄 등 보안대책을 실시해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침 이행에 대한 감사 또는 점검할 수 있고, 관계기관에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< 보안관리지침 세부 내용 (예시) >

문서작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후보지 관련 자료 생산 시 문서 상단에 보안주의 문구 기재 • 관계기관 협의공문 시행 시 주민공람 이전 보안주의 고지
회의개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회의 참석인원 최소화, 참석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 • 회의종료 후 회의자료는 원칙적으로 회수 및 파쇄 단, 회의 목적 및 성격 상 공유할 경우 공유 자료·인원 최소화 공유시 사유, 회의일시 등 작성, 참석자 명부 또는 서약서 징구 • 회의자료 또는 논의내용 유출 금지
자료설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회·지방의회·정당 등에는 해당 지역구에 한하여 설명 • 도면작성 최소화 • 위치·면적 등 상세내용 표기 금지, 불가피한 경우 개략 위치만 표기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출처표시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 이정복 사무관(☎044-201-3102), 김수현 사무관(☎044-201-44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